



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

[시행 2025. 6. 30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35호, 2025. 6. 25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기업훈련지원과), 044-202-7266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·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)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교육훈련기준 개발·보완기준)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,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추 수 있도록 개발·보완한다.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.

일학습병행자격 등급	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	국가기술자격 등급
L6	6수준	-
L5	5수준	기사
L4	4수준	산업기사
L3	3수준	산업기사
L2	2수준	기능사

부칙 <제2025-35호,2025.6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재무기획관리_L5, 기업교육_L5, 카지노기획개발_L4, 와이어방전기공_L3, 형조방전기공_L4, 냉간압연_L4, 비철금속건식제련_L4, 비철금속습식제련_L2, 비철금속습식제련_L4, 전자기기기구개발_L2, 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_L2, 섬유공예_L3, 피트니스건강관리_L4, 산업환경 기계설비_L5, 농산식품저장·유통_L3, 수산식품저장·유통_L3, 축산식품저장·유통_L3, 환경시설관리_L4, 광물·석유자원개발_L3, 광물·석유자원개발_L5의 일학습병행 실시 종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(일학습병행자격 종목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학습병행자격을 계속 보유한다.

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취득한 일학습병행자격을 계속 보유한다.

④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변경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교육과정 변경 어려움 등의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